##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 18682 호, 2022. 1. 4., 타법개정]

- 제 109 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u> 관한 법률」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 2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 ② 제 1 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별소비세액이 1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 2. 개별소비세액이 1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만원
    - ③ 제 1 항은 2009 년 7월 1일부터 2022 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8. 12. 24., 2021. 12. 28.〉
    - ④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3 호</u>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 2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1.12.31.〉
    - ⑤ 제 4 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1,, 2017.12.19.〉
  - 1. 개별소비세액이 3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 2. 개별소비세액이 3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 만원
    - ⑥ 제 4 항은 2012 년 1월 1일부터 2022 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1. 12. 31., 2014. 12. 23., 2017. 12. 19., 2020. 12. 29.〉
    - ⑦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6 호</u>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 2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6. 12. 20., 2018. 12. 31.〉
    - ⑧ 제 7 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20.〉
  - 1. 개별소비세액이 4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 2. 개별소비세액이 4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 만원
    - ⑨ 제 7 항은 2017 년 1월 1일부터 2022 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신설 2016. 12. 20., 2019. 12. 31.〉 [전문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1. 12. 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 18682호, 2022. 1. 4., 타법개정]

제 109 조의 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9 년 12 월 31 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이륜자동차와 <u>「자동차관리법」</u>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19 년 6 월 30 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신조차(新造車) 중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 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노후자동차 1 대당 신차 1 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9.12.31.〉

- ② 제 1 항에 따른 1 대당 감면액이 100 만원을 초과하면 100 만원을 감면한다.
-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제 1 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u>「개별소비세법」 제 3 조</u>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 다만,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신차구입자를 「개별소비세법」 제 3 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 1.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감면세액(노후자동차 1 대당 신차 2 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신차 모두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으로 한다)
- 2. 제 1 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 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노후자동차 1 대당 신차 2 대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100 분의 4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 3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절차, 증거자료의 확인 및 제출,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⑥ 삭제 〈2016. 12. 20.〉

[전문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9. 12. 31.]

### 제 109 조(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①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u>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 2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 ② 제 1 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별소비세액이 1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 2. 개별소비세액이 1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만원
- ③ 제 1 항은 2009 년 7월 1일부터 2012 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8.12.2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 발의연월일 : 2016. 8. 3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과 적용사례

KAAA(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

로부터 폐자동차의 고철, 폐유리, 폐타이어 등의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03분의 3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가 2016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자동차의 95% 이상을 재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재활용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할 필요가 있음.

특히 폐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명시하고 있어 매입처를 분명하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입법취지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원자재가격 폭락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과 더불어 이중과세 방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폐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존속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자동차를 다른 재활용폐자원과 분리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 일까지 연장하고 매입세액 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상향함으로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제 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자동차 자원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폐자동차"로,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폐자동차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각각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및 폐자동차"로 한다.

3. 폐자동차: 110분의 1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최초로 폐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중고자 <u>자동차</u>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 동차 및 폐자동차-----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 지,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폐자동차를 2019년 12월 31일까지-----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 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폐자동차: 110분의 1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 자원·중고자동차 및 폐자동차-----<u>자원 및 중고자동차</u>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 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및 폐자동 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구체적 적용

##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시항

지방세관계법 및 조례, 조세감면법령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지방세관계법 및 조례, 조세감면법령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채권, 비고로 나눈 표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채권	비고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b>75%</b> 감면	감면금액 X 20%	매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 32 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 소비성 업종 제외. - 법인자본금은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 사업포괄양수도의 경우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매매용(중고차량)	100% 감면	비과세	면제	취득 후 2년 이내 미 매각·폐차 말소 시 취득세 추징 (단, 취득 1년 경과 차량 검사 부적격 판정 폐차 시 취득세 추징 X)
수출용(중고차량)	100% 감면	비과세	매입	취득 후 <b>2</b> 년 이내 미 수출·폐차 말소 시 취득세 추징

※ 단,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